

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



구 미 시

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1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글로벌 이동통신사 상용망과 동일 수준의 5G 시험망 테스트베드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융합기술연구본부(모바일융합기술센터) 내에 구축하여, 중소기업 5G 융합제품과 이동통신 네트워크 간의 연동 시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중소·중견기업 제품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
- 나.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2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자·출연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(1) 출연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(2) 출연금액 : 14억원(도비 4.2, 시비 9.8)
- (3) 사업내용 : 5G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장비구축 및 시험환경 조성
- (4) 출연근거

○ 법 령

지방재정법(제18조), 국가균형발전특별법(제3조), 정보통신산업진흥법(제14조, 제22조),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(제30조, 제31조)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(제20조)

○ 조 례

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나. 주요 사업

- (1) 사 업 명 :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
- (2) 사업기간 : 2019년 5월 ~ 2023년 12월 (4년8개월)
- (3) 사업위치 : 구미대로 350-27 (금오테크노밸리 모바일융합기술센터)
- (4) 총사업비 : 195.92억원 [국비125.92, 도비21, 시비49]

- 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사업비	연차별 투자계획				
	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
계	195.92	9	60.6	64.72	35.6	26
국 비	125.92	4	37.6	50.72	21.6	12
도 비	21	1.5	6.9	4.2	4.2	4.2
시 비	49	3.5	16.1	9.8	9.8	9.8

- (5) 추진주체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경상북도, 구미시

- (6) 주관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
(7) 사업내용 : 5G 이동통신 국제표준에 따른 시험망 장비구축

- (1단계 : NSA) 초고속·대용량 서비스 시험환경 제공
- (2단계 : SA) 저지연(실시간)·초연결 서비스 시험환경 제공
- (3단계) 5G 서비스 공통 플랫폼 및 고성능 5G 융합서비스 시험지원 환경 제공

(8)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- 2016. 12. : 경북 대선공약 제언, 미래부 5G발전전략 반영
- 2017. 3. : 경북 대선공약사업 반영
- 2018. 3. : '19년 신규사업(균형발전특별회계) 제출
- 2018. 12. : '19년 국비사업 반영
- 2019. 3.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공고
- 2019. 5. : 수행기관 선정 평가 및 사업선정
- 2019. 6. : 사업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
- 2019. 12. : 4G-5G 연동시스템 구축
- 2020. 09. : 장비실·시험실(차폐실) 확장 리모델링 공사
- 2020. 11. : 4G 코어업그레이드, 5G 액세스 장비구축
- 2020. 11. : 5G 테스트베드 서비스 실시
- 2021. 7. : 5G 테스트베드 개소식 개최
- 2021. 12. : 5G 코어장비, 5G edge 코어장비,
3.5GHz/28GHz 소형기지국 장비구축
- 2022. 1. : 5G SA(단독모드) 서비스 개시
- 2022. 11. : 5G 융합서비스 인프라 구축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(1) 글로벌 수준의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의 융합제품 시장경쟁력 강화와 국내·외 시장진출 지원
- (2) 자본력이 부족하여 자체 5G 테스트베드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개방형 테스트베드 시험환경을 제공함으로써 5G 융합제품 신규 개발을 촉진하고 타 지역대비 5G산업 선도
- (3) 5G 융합서비스 적용으로 경북의 노후 산업단지 스마트화 및 구미 지역 산업·경제 재생, 재도약의 기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(2)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3조
- (3)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 제14조, 제22조
- (4)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0조, 제31조
- (5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(6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

제3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□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

제14조(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,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새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22조(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
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조사·통계
2. 정보통신기술의 개발
3. 전문인력의 양성
4.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의 조사·연구
5. 정보통신표준의 연구·개발 및 보급
6.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
7.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정보 유통체계의 구축
8.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대외 협력
9.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창업·법률·회계·경영 등에 대한 지원
10. 정보통신기술등의 유통구조 개선 및 보급 촉진
11.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

□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

제30조(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) ①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국내외 현지 창업

및 해외진출 지원

2.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
3.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자금, 인력, 판로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
4.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한 법률·경영·세무 등의 상담
5.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이 개발한 기술의 해외 홍보,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중개·알선
6.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번역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지원
7.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해외시장 정보의 제공 및 투자유치 지원
8.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기업 및 벤처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거점의 구축 및 운영
9. 정보통신융합등 벤처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
10. 그 밖에 창업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31조(국제협력 및 글로벌협의체 운영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.

1.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
2.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해외 전문교육 및 해외연수 지원
3.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·개발사업 등의 지원
4.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
5.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
6.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 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글로벌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글로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3항의 글로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 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

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3조 (재원의 조달)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
 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 3. 대학, 연구소,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
 4.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- 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·보조할 수 있다.

소관 실·과		신성장산업과
입 안 자	과 장	박노돈
	담 당	전명성
	담 당 자	김충현 (480-6162)